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508

발의연월일: 2020. 10. 14.

발 의 자:이재정・인재근・정태호

윤재갑 · 김진표 · 진성준

송영길 · 양기대 · 김영호

오영환 · 도종환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 소속의 통일교육원에서 전문강사를 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통일교육 수요의 확대에 맞추어, 전문 강사 양성을 통일교육원에 한정하여 법률에 규정하기보다는 시행기관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것이 합당함.

또한, 통일교육원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하여 설립된 통일부 소속기관으로서, 「통일교육 지원법」에 소속기관 명칭을 구체적으로 인용하여 제시하고 있는 점도 일반적인 법률 규정 방식에서 합당하지 않다고 복.

한편, 통일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변화하는 최근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 변화 등을 반영한 보수교육 등 지속적 인 관리를 통해 전문강사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이에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통일교육원' 제시를 삭제하는 한

편, 통일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보수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9조의2).

법률 제 호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원에"를 "통일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을 부여한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개설되는 통일교육 전문과정의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했 개 정 아 제9조의2(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제9조의2(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 양성)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 육원에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여 그 과 개설하여 그 과정을 수료한 사 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통일교 람에게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 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할 수 격을 부여할 수 있다.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설되는 통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일교육 전문과정의 운영 등에 자격을 부여한 전문강사를 대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 상으로 보수교육 등 지속적인 장관이 정한다. 관리를 해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개설되는 통 일교육 전문과정의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 장관이 정한다.